



확인검사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?

» 설치년도에 따른 확인검사 대상

가. '09.3.22일 이후에 설치된 활동공간을
대상으로 함

나. '09.3.22일 이전에 설치된 활동공간은
'16.1.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

- 1) 430㎡미만의 사립 어린이집·유치원 : '18.1.1일부터
- 2) 430㎡이상의 사립 어린이집·유치원, 국·공립 시설 :
'16.1.1일부터



확인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
» 확인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
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

» 확인검사결과 부적합한 시설을 어린이가 이용하게 하였을 경우
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

확인검사 신청은 어디에, 어떻게 하나요?

콜센터나 검사기관에 유선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


콜센터 **1899-1021**



확인검사 신청 가능한 검사기관

-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-2102-2672
- FITI시험연구원 043-711-8868
-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-428-3817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-6921-3200
- 한국환경공단 032-590-4802
-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31-999-3000
- 대한산업안전협회 02-860-7150
- KOTITI시험연구원 02-3451-7314

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

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: 044-201-6761
www.me.go.kr

어린이들이 안심하고
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
환경부가 노력하겠습니다.



행복한
대한민국을 여는
정부 3.0
[깨끗함 · 투명 · 소통 · 열정]



MINISTRY OF ENVIRONMENT
www.me.go.kr



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

미리미리 확인하세요~



확인검사제도란 무엇인가요?

»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, 증축, 수선할 때 환경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.

※어린이활동공간 : 어린이집, 보육실, 유치원 교실, 초등학교 교실 및 도서관, 어린이 놀이시설, 특수학교 교실

확인검사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?

- » 활동공간을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
- »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㎡이상 증축한 경우
- » 바닥·벽면·천장 등의 총면적을 70㎡이상 개보수 하는 경우

※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은 해당되지 않음

확인검사는 언제 받나요?

- »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(특수)학교 신축·증축 또는 수선 후 30일 이내



확인검사는 왜 해야 할까요?

- »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대사량은 50%이상 큰 반면, 신경·호흡·생식 기관 등의 발달이 불완전 하여 유해물질의 노출에 민감하게 반응 하여
- » 중금속 등에 노출되면 뇌와 중추신경계에 장애, 성장장애,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확인검사 절차는?

» 신축할 경우



» 증축·수선 할 경우

-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확인검사를 신청합니다.
-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, 합성고무바닥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확인검사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.
 - 증축의 경우 : 증빙서류를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30일 이내 제출
 - 수선의 경우 :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

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- 환경표지 인증서 사본
- 제품의 제조업체, 제품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

※ 반드시 녹색제품정보시스템(www.greenproduct.go.kr) 제품명을 검색하여 환경표지제품 여부를 확인